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1가단38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임한결, 장종필, 김홍철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24. 접수 제661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E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며, E, C은 D의 오빠인 F의 자녀들이다.

2)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 및 시행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광명시 H 건물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I은 G의 사내이사이며 D의 언니이다.

나. G는 2015. 12. 1. J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767,363,000원에 분양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는 K을 거쳐 2016. 7. 6. C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다.

다. C은 2016. 7. 6.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주식회사 L(이하 'L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6,946,000원은 J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출금 중 191,447,170원은 분양대금으로 추가 납입하여 합계 498,393,170원을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68,969,830원(= 767,363,000원 - 498,393,17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I이 이를 관리해왔는데, 이 사건 상가는 오랫동안 공실로 있다가 공인중개사이기도 한 I의 주선으로 C으로부터 2020. 11. 9. M에게 대금 7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전매계약 잔금 74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20. 12. 7.이다.

마. G는 2020. 12. 21. 원고와 사이에 G의 피고에 대한 위 268,969,830원의 잔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C은 2020.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같은 날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권자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가 2021. 1. 8.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C의 이의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이에 따라 진행된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204호)에서는 2022. 6. 15.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305)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3다240718)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G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금 채권자인데 C은 2020. 12. 2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던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불과 18일 만에 2021. 1. 8. 이 법원 2021차4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통상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소 제기 전에 변제독촉이나 채권추심을 시도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C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채권추심을 시도한 바 없다.

나) D은 원고 회사 사무실 아래층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도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원고의 위 지급명령신청서도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받고 작성해 주었는데, 위 지급명령 서기로 695,27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20. 12. 22.자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이 사건 채권양도와 동시에 C에 대한 변제독촉 등 임의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부실채권이어서 이 사건 채권액의 10%를 양도대금으로 정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 감정인 O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L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20. 12. 21. 무렵 이 사건 상가의 시가가 747,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상가에 마쳐진 L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394,000,000원이어서 이 사건 상가의 잔존가액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의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C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송달받은 2020. 12. 22.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상가에 위 L은행의 근저당권을 제외하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권설정등기는 마쳐져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에 이 사건 상가의 잔존가액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보아 10% 상당의 대금만 받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또한 I은 2020. 12. 21. 14:0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양도대금으로 26,896,983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① 같은 날 14:49 N 법무사에게 2,640,000원을 송금하고, ② 같은 날 14:50 I 명의의 P조합통장으로 7,425,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돈을 같은 날 15:31 D의 아들 Q에게 송금하였으며, ③ 같은 날 14:52 12,711,200원을 M에게 송금하고, M는 이 돈을 같은 날 15:04 D의 아들 Q에게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D으로부터 지급된 양도대금이 다시 D의 아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보이는 등 G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양도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도 명백하지 않다.

마) I과 D은 친자매 관계로서 피고 대표이사인 E의 부친인 F과는 남매사이인데, D과 F은 모친 봉양문제 등으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이 사건 소송은 가족 간 분쟁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기

별지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경기도 광명시

[도로명 주소] 경기도 광명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31.5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경기도 광명시 대 939.8㎡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939.8분의 9.27

